

『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 주 찬 의원

2. 제안이유

-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로서 기반강화와 활성화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계승, 발전 및 조직 육성에 기여하고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사업비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새마을연구소 및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)
- 새마을운동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2조, 제3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새마을연구소 및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
- 안 제3조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새마을운동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로서 기반강화와 활성화를 위해
새마을연구소 및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
새마을 운동조직 운영, 새마을사업 추진,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
능력 배양 등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
새마을운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
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